

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(독촉장)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자금 납입고지서(독촉장)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28.

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일자리안정자금 채납자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: 보조금법 제33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 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9. 28.~ 2026. 10. 12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(5층)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법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조은경(Tel 031-788-15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